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강화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61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강화	2
※ 참고자료	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1.

다. 회 부 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현재 해당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 이수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은 단순한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집합교육을 통한 대면 학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강화

가. 개정안 요지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으로서의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이수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생략)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 -----. -----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후단	나. ----- ----- ----- ----- 이 경우

<u>신설></u> 2. (생략) ③ ~ ⑥ (생략)	<u>해당 교육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¹⁾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하여,²⁾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산업 생태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3년	320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675명 이수 - 온라인 7회 운영(5월~11월, 매월 운영)
'24년	340백만원		725명 이수 - 온라인 9회 운영(3월~11월, 매월 운영)
'25년	340백만원		501명 이수(9.1기준) - 온라인 9회 운영(3월~11월, 매월 운영)

※ 예산은 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4대 교육(법정교육, 등록교육, 소양교육, 성교육)의 전체 예산이며, '19년 대면 교육, '20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중임.

계 구성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원격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집합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고, 교육장·강사 인력 등 추가적인 행정·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집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물적·인적 기반 구성에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1

관련 협·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음악 레이블산업협회	• (현행 유지) ① 교육 참여자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측면에서 비효율, ② 집합교육은 교육을 진행하는 측면에서도 장소 확보, 식비, 부대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 ③ 집합교육의 교육 효과가 항상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온라인 교육의 경우 반복 학습(녹화 영상 제공, 자료 재활용 등)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바,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 (현행 유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에 따르면 교육 이수시간이 40시간으로 규정되어있고, 대면교육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소 5일의 교육 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는 일정 관리에 큰 부담임 - 아울러, 온라인 수업 역시 이수를 위해서는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하는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자질부족의 직접적 원인이 온라인 수업방식에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자질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면교육으로의 전환보다는 수업 내용, 구성, 평가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